

[]무선국 []전파응용설비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[illegible]

「전파법」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([]무선국 []전파응용설비)을(를)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이
의
의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전파관리소장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

귀하

첨부서류	「전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(「전파법 시행령」 제4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기재요령

용도지역: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.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luris.molit.go.kr>)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에서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